

심지어는 이사기간 동안의 숙박비, 일비까지 지급해야만 한다. 용산기지 이전요구를 한국측에서 했기 때문에 모든 비용은 한국이 부담한다고 협정상에 명시하고 있으나 얼마를 부담할지는 명시하지 않아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부담해야 하는 부당성을 갖고 있다. 또한 용산기지의 이전이 한국측의 요구뿐만 아니라 주한미군 변환과 재배치 계획에 따른 미국의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은 전혀 반영되지 않아 굴욕적인 협상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또한 이전하는 시설들을 기존 수준이 아닌 '임무와 기능'에 따른 이전으로 현재보다 더 향상된 시설들이 건설되도록 협정이 체결되어 있다.

용산협정은 또한 비용총액조차 명시되어 있지 않은 선언적 내용을 담은 문서(포괄협정)만 국회비준동의를 거치고 정작 세부내역을 담고 있는 하위문서들은 이를 피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은 국회의 비준동의를 거치도록 되어있는 헌법 60조 1항을 위배한 것이다. 또한 사업의 전권을 비공개로 운영되면서 미국의 요구가 쉽게 관철되어왔던 SOFA합동위원회에 넘김으로써 미국이 전횡을 부릴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미2사단의 경우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 개정협정에는 미국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종전의 사례나 미국의 문서들을 보면 2사단 이전비용의 대부분도 우리가 부담하게 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sup>21)</sup>

이처럼 주한미군 재배치 협상은 위헌적이고 불평등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오죽했으면 미국무부조차 주한미군 재배치 협상에서 자신들의 목표를 '초과달성(above target)'<sup>23)</sup>했다고 했겠는가?

21) 이와 관련하여 직간접비용을 모두 합하여 한국측이 부담해야 할 미군기지 이전비용이 11조가 넘는다는 보도가 있다. 황일도, "미군기지 이전비용, 두 배로 늘어난다!...", 《신동아》, 2005. 8월호, 210~219쪽 참조.

22) 유영재,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공청회 발표 자료", [http://www.spark946.org/bugsboard/index.php?BBS=pds\\_3&action=viewForm&uid=159&page=4](http://www.spark946.org/bugsboard/index.php?BBS=pds_3&action=viewForm&uid=159&page=4), 2004. 12. 6. 및 평통사, "독일사례로 본 용산기 이전협정의 굴욕성", [http://spark946.org/bugsboard/index.php?BBS=pds\\_3&action=viewForm&uid=117&page=7](http://spark946.org/bugsboard/index.php?BBS=pds_3&action=viewForm&uid=117&page=7), 2004. 8. 22 참조

23) "용산기지가 이전 '초과달성', 미국무부 업무평가", 《연합뉴스》, 2004. 12. 12.

#### 4. 평택미군기지확장 저지투쟁의 의의와 과제

##### 1) 주한미군의 아태기동군화를 막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지켜내자.

미국은 주한미군 아태기동군화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한미양국은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FOTA)' 회의를 통하여 주한미군 아태기동군화를 위한 각론 수준의 합의를 이뤄내고 이를 실행하고 있다. 한미양국은 이어 '한미동맹 안보정책구상(SPI)' 회의와 '전략적 유연성'회의 등을 통하여 주한미군 아태기동군화의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 하고 있다.

확장되는 미군기지는 변화된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지로서 미국의 전략에 따라 대북 선제공격 기지가 되고, 중국 포위와 중국-대만 간 분쟁의 전초기지가 된다면 대상 국가들도 이를 그대로 바라만 보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이미 북한은 평택을 겨냥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정거리 100km가 넘는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바 있고<sup>24)</sup>, 중국도 주한미군이 자국을 겨냥하는 것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평택미군기지가 미국의 새로운 군사전략 수행의 전진기지가 된다면 한반도 및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과 갈등, 전쟁의 위협이 높아지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미군에게 평택기지 확장을 허용하는 것은 결국 주한미군의 아태기동군화와 미국의 새로운 군사전략 구상에 따라 한반도와 동북아에 우리의 의도와는 무관한 전쟁이 벌어지고 전쟁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과 같다.

이런 점에서 평택미군기지 확장은 평택지역 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며, 우리의 안전과 평화와 직결되는 문제가 되며, 이에 미군기지확장을 저지하는 것은 우리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 된다.

##### 2) 평택주민의 생존권과 공동체를 지켜내자

24) "군 '평택 미군기지가 사정권'", 《중앙일보》, 2005. 5. 4.

농민에게 땅은 생명과도 같은 존재다. 특히, 이들 중 상당수는 어디 가서 새로운 삶을 개척하기도 어려운 60~70대가 넘는 노인들이다. 이들로부터 땅을 빼앗는 것은 생존권을 송두리째 박탈하는 것이다.

이들은 또한 상부상조의 아름다운 전통을 유지하면서 살아왔다. 그런데 정부가 기지확장을 위해 주민들을 분열시키고 이간질하면서 주민 사이에 불신과 반목이 극에 달해 있다. 보상금과 권력을 이용하여 주민들을 이간질시키고 평생 농사만 지어온 사람들에게 온갖 협잡과 사기를 일삼는 행위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평택 미군기지확장 저지 투쟁은 군사안보와 미군기지 앞에 주민들의 권리와 생존이 희생되어도 무방하다는 인식과 논리를 깨고 주민생존권을 지켜내고 마을 공동체의 회복하는 것이다.

작년 9월 1일부터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촛불행사를 진행하면서 일방적인 정부의 토지수용 방침에 대해 완강히 거부하고 있는 주민들의 투쟁에 함께 연대하는 것은 곧 우리의 안전과 평화를 지키는 것이며, 미래를 지키는 것이다.

지난 7월 10일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평화대행진 이후로 많은 개인, 단체들이 평택을 찾아 기지순례를 진행하고 있다. 오는 12월 11일 또다시 주민들과 범대위는 미군기지 확장저지를 위한 문화제를 준비하고 있다. 황새울 벌판을 노란 미군기지확장반대의 깃발로 물들일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의 지지와 연대가 필요하며, 미군기지에 맞서 싸우는 국제 평화운동들과의 연대도 만들어 갈 것이다.

## 필리핀 미군기지과 환경문제

기지정화를위한민중태스크포스/ 국제기지정화위원회연합 공저<sup>25)26)</sup>

### 1. 역사적 배경

필리핀이 3세기 이상 지속된 스페인 치하로부터 독립했을 당시 미정부는 당국의 경제적 이해와 대중국 전략을 이유로 필리핀을 침략했다. 약 50만 명에 이르는 필리핀인의 목숨을 앗아간 전쟁을 계기로 필리핀은 약 반 세기 동안 사실상 미국의 식민지로 전략하게 되었다. 이후 필리핀에는 '자주 통치'라는 기치 아래 꼭두각시 정권이 들어서게 되었고 그 결과 미국의 이해 관계에 부합하는 '신식민 질서'가 필리핀 경제, 정치 및 문화 전반을 지배하게 되었다.

이미 제 2차 세계 대전 기간 동안 3여년에 걸쳐 일본의 지배를 받았던 필리핀은 파시즘 정권이 무너지기 전에 게릴라들의 활동에 힘입어 국지전에서 승리를 거둬두고 있었으나 미군이 '위대한 해방군'을 자처하면서 필리핀 대중을 호도하는 등 필리핀을 장악하기

25) 기지정화를위한민중태스크포스 : PTFBCU, People's Task Force Bases Clean-Up

기지정화위원회 : ABC, Alliance Bases Clean Up

26) 번역 : 이현지

시작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필리핀 지방 관료들의 교육이라는 대외적 명분을 더 이상 내세울 수 없게 된 와중에 독립에 대한 필리핀 국민의 거센 요구에 봉착하게 된 미정부는 한편으로는 독립을 보장해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각종 조약 및 협정을 통해 미국의 필리핀 경제, 정치 및 문화에 대한 지배를 더욱 공고히 하기에 이르렀다. 여기에는 1947년에 체결된 미군기지협정(MBA)이 포함되었는데, 이 협정은 필리핀 영토 내의 미군 주둔을 보장하는 법적 장치로 기능하면서 이후 서태평양 및 인도양에 대한 미국의 장악력을 보장하기도 하였다. 애초의 협정은 99년동안의 무상대여를 제공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이후 대여 기간이 1991년에 종료되는 것으로 수정되었다. 이 협정은 환경 문제에 관한 인식이 부재하던 시점에서 체결되었던 관계로 환경 보호나 미군에 의한 오염의 정화 등의 내용을 담보하지 못했다.

미군기지 협정의 체결부터 1991년 미군 주둔 연장에 관한 조약 체결 거부에 이르기까지 국내 관련 단체, 풀뿌리 활동가 및 법전문가들은 미군 기지 철폐를 위한 운동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1991년 9월 16일 최고조에 달한 반기지 운동에 힘입어 필리핀 상원은 새로운 미군 주둔 조약을 부결시켰으며 이에 따라 주둔 기간 5년 연장을 위해 필리핀 정부에 압력을 행사했던 미군은 계획했던 것과는 달리 필리핀 땅을 떠나야 했다. 1992년 미국 GAO<sup>27)</sup> 보고서가 일반에 공개될 때까지 기지 오염에 관한 정보가 거의 전무했던 당시 필리핀 정부와 시민 사회 진영 측은 사후 협정 과정에서 오염된 기지의 정화에 관한 어떤 요구도 하지 않았다. 미군 철수는 1991년 파나투보 화산이 폭발했을 당시 클라크 미군기지에서 시작되어 수빅 기지 주둔 미군이 떠나는 1992년 완료되었다.

한편 대부분의 주요 기지는 20세기 초 미국 지배가 시작되는 시점에 설립되었는데 23군데에 이르던 것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7개로 통폐합되었다. 수빅 해군기지, 클라크 미군기지, 캠프 존 헤이 미군기지, 캠프 월러스 미군기지, 산 미젤 해군 통신 본부, 크로우 계곡 폭격장 그리고 오도넬 통신 본부 등 이상 7개의 군시설은 총 7만 9천 헥타르에 달하는 영토, 물 및 숲을 아우르는 면적을 차지했다. 이중 클라크 미군기지와 수빅 해군

27) 미의회예산회계국. General Accounting Office

기지가 가장 큰 규모의 시설로서 전자의 경우 싱가포르 및 미국의 콜롬비아주보다 큰 면적을 차지하였고 심지어는 미국 본토 밖에 소재한 모든 미군기지 면적을 합친 것보다 넓었다. 클라크 미군기지와 수빅 해군기지는 미국의 대중국, 시베리아, 한국,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파키스탄 및 중동 전략에 있어서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였다. 특히 수빅 해군기지의 경우 베트남전 당시 전투 지원 기지로 활용되었던 전력의 있다.

과거 필리핀 영토 내 미군기지는 제 13 미공군 부대 본부, 미 제 7함대의 주항만(primary port), 출동대기진지(staging point), 통신 집합 및 릴레이 본부(communications nodal point and relay station), 핵잠수함 기지, 위성 관찰을 위한 지상 터미널, 함선 및 항공기 수리 시설, 훈련 장소, 군수장비 보급소, 병참고, 공군 폭격장, 전쟁 훈련(war exercise)의 수륙 양면 작전 지원 그리고 서태평양과 인도양 주둔하는 공군 및 미군 소속 병사들을 위한 휴양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였다

당시 1만 3천명 이상의 미군이 필리핀 내 기지에 주둔하고 있었으며(이 수치는 민간 고용인 및 부양 가족을 제외한 것임) 매일 평균 9천 명에 달하는 선원 및 해병대원이 기지를 방문하였다.

## 2. 클라크 미공군기지와 수빅 미해군기지로 인해 야기된 환경과 건강 피해

사실 필리핀에 소재하고 있던 미군기지는 엄청난 규모, 다목적 기능, 긴 사용기간 및 타 해외 미군기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제약 등을 고려할 때 필연적으로 대량의 유독성 및 위험 물질을 배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가장 큰 규모의 미군기지를 두고 있는 필리핀이야말로 가장 심각한 문제를 직면하고 있을런지도 모른다"(The U.S. Military's Toxic Legacy, National Toxic Campaign Fund, 1991). 미 국방부 고위급 간부인 David Berteau는 "미국 내에 소재한 미군시설에서보다 수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활동들이 더 낫다고 믿을만한 근거는 없다"면서 "수빅에 주둔하는 미국 내 해군 시설은 슈퍼펀드(Superfund) 리스트 상 가장 열악한 곳으로

꼽힌다. 수빅의 상황은 매우 충격적으로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해외 미군기지의 환경 문제를 담당하는 국방부 소속 관리인 Gary Vest는 "필리핀 내 미군기지 지역이 미군에 의해서 오염되었다는 사실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Boston Globe, 11/15/99).

미국 국방부의 우선정화목록(National Priorities List)에 기재되어 있는 미국 내 기지들 중 MacLellan Airforce Base, Tinker Air force Base and Treasure Island Naval Station, Hunters Point Annex와 같은 곳은 규모, 기능, 운영 기간 등의 면에서는 비록 수빅과 클라크 기지에 못 미치더라도 오염 정도에 있어서는 비슷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지역에서도 토지 오염, 지하수 오염, 물 오염, 포구 침전물, 대기 오염 및 대수층 오염의 징후가 발견되었다.

기지정화를위한민중태스크포스(PTFBCU)에서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핵폐기물, 열화우라늄, 고염제 및 불발 포탄 등에 의한 더 심각한 수위의 오염은 야기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수빅은 핵잠수함 기지였고 기지에서 근무했던 이들의 여러 증언이나 베트남전 중에 New Plymouth에서 수빅까지 고염제 성분 물질이 수송된 적이 있었다는 뉴질랜드의 교통부 장관의 확인 발언으로 미루어 봤을 때 자료상의 결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힘들다.

또한 열화우라늄의 경우 1990년 대 미군이 걸프전 출전에 앞서 사용 방법을 대대적으로 훈련 받았던 것으로 보이며 불발탄으로 인한 사고사도 끊이지 않았고 수빅과 클라크 기지 양쪽 모두 2만 헥타르에 달하는 크로우계곡 폭격장을 비롯하여 몇 개의 폭격장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 역시 심각한 수위의 오염을 반증한다.

PTFBCU는 검색 가능한 모든 문서와 연구 보고서를 토대로 클라크와 수빅 기지 양쪽에 46개 이상의 오염 지점이 있다는 결과를 도출했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이 POPs(Persistent Organic Pollutants)로 오염되었음을 밝혀냈다. 샌프란시스코신문(The San Francisco Chronicle)은 미국내 NGO 전문가들을 인용하여 만약 클라크와 수빅에서의 문제가 미국 국내에서 발견되고 보고되었다면 바로 정부 차원의 조사를 실시하여 환경

과피 및 공중보건 상의 위해가 가해졌는지를 확인했을 것이라고 했다. 클락 기지 내에서 발견된 27개의 오염 지점의 경우 캘리포니아에 소재한 Maclellan 공군기지 내 258개의 오염 지점과 비등한 수준으로 오염되었음을 확인하게 되었는데 특히 지하수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빅에서 발견된 화학 물질 중에는 미국 내에서 유독성이 가장 강한 물질 20개 중에 포함되는 것이 다량으로 발견되었다. 이 같은 비교로 미루어 보아 전문가들은 대대적인 오염 조사를 위해 약 3백만 달러, 그리고 정화 작업을 위해서는 각 기지 당 십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미군기지로 인한 필리핀 내 환경 오염에 관한 자료를 가장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있는 문서는 1992년에 공개된 미국 GAO 보고서로서 이 기관은 미국 상원의 조사 기관이다. 이 보고서는 "필리핀 내 미군기지 지역에서 미국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들이 자행되고 있으며 환경적인 측면에서 정화 작업을 거행할 경우 일명 슈퍼펀드(Superfund) 수준의 비용이 들 것"이라고 적었다. 보고서에는 또한 클락 기지에서 PCB 및 석면 사용 감축 계획이 의도적으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나와 있다. 슈퍼펀드란 오염 수위 상 가장 최악에 해당되는 것으로 미국 내에서 수백만에서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비용이 드는 경우를 뜻한다. 이에 앞서 1991년 GAO 보고서에 의하면 필리핀 내 대부분의 미군기지 시설이 열악한 폐기물 처리 시설 및 계획을 갖고 있다고 했다.

위와 같은 심각한 오염 문제로 인해 기지 지역 내에서 심각한 건강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는 각종 건강 설문조사, PFBCU 연구 보고서 및 기지 인근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 작업 결과에서 확인된 사실이다. Clear Water Revival Company라는 미국 내 컨설팅 회사는 클락 기지에 관한 Woodward Clyde & Weston의 보고서를 토대로 클락 기지 지역 내 지하수 오염이 심각하며 수빅 자유항 지구 역시 심각한 환경 오염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PTFBCU의 기획으로 이루어진 한 캐나다 NGO의 보고서에 의하면 클락 기지 지역의 유독 물질로 인한 질병이 발생한다면 오염 지역 인근 주민들의 신속한 이주를 권장하였다. 이 보고서의 책임자인 Bertell은 이전에도 보팔(Bhopal)의 유독 물질 사고를 다룬

클로 저명한 영국 잡지인 British Medical Journal에 기고한 바 있다. Bertell의 연구는 기지 인근 지역 주민들 중 20세에서 50세 사이의 여성들이 생식 기관, 신경계통 및 신장 상의 질병으로 인한 건강 문제를 겪고 있으며 절반 이상의 아동이 먼지로 인한 호흡 곤란이나 오염된 식수로 인해 대체적으로 건강 상태가 양호하지 못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PTFBCU는 또한 과거 미군의 군사 시설이었다가 1991년 화산 폭발 직후 수천명의 이주민을 위한 수용소로 사용된 CABCOM<sup>28)</sup>에서 지낸 이들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암 발병률, 백혈병, 자연 유산, 사산, 선천적인 뇌손상 및 심장병, 그리고 다른 이재민 수용소에서는 관찰되지 않는 신경성 질환에 시달리고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수빅 기지 내 근무자 중 석면에 노출되었던 이들은 이로 인한 폐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희생자들의 모임인 YAKAP(야캅)-Subic 회원 1,500명 중 125명은 석면 관련 질병으로 사망했으며 그보다 더 많은 이들이 폐암으로 직결되는 석면침착증에 시달린다고 알려졌다. 이들 중 매달 서너 명이 사망한다고 한다. 이 자료에는 선박 수리시설에서 근무했던 나머지 8천명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서 이들 역시 다양한 수위의 석면 노출을 경험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폐품수집부(scavenger), 기지 내 주민들 및 근로자들 그리고 인근 지역 주민들 외에도 대기를 통해 이동하는 석면 먼지나 가루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들이 약 2만에서 3만 명에 이른다. 게다가 미군 철수로부터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수빅 기지 지역의 한 병원에서만 320건의 백혈병 진단 건수가 보고되었는데 그 중 80%가 어린이였다. 이는 미국내 기지 주변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백혈병 환자 비율보다 몇 배나 높은 수치이다.

보건부와 국립 독극물통제기관에서 실시한 혈액 검사에 따르면 CABCOM에서 지냈던 이들의 혈액에 납과 비소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고 했다. 보건부에서 비밀리에 97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검사에서 47명이 높은 수치의 비소 및 납 성분 함유량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 같은 사실은 극비 정보로 PTFBCU가 사후에 보건부로부터 확보한 자료를 근거로 한 것으로서 결과적으로 CABCOM에 머물렀던 17만5천명 중 약 절반에 해당되는

28) 클락 미공군기지 사령부 Clark Air Base Command

이들의 몸 속에 납/비소 성분이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예산상의 제약 및 PCB나 각종 살충제와 같이 더 위험한 성분의 물질 함유 여부를 조사하지 못한 한계때문에 위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 사실 관계는 좀 더 보충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PTFBCU는 수빅 내 지역 및 인근 지역 주민들의 식수원인 세 군데의 강에 높은 수치의 크롬 6물질이 발견되었다는 환경자원부의 보고서를 우여곡절 끝에 공개하기도 했다.

이상 언급된 오염 문제는 미정부의 정보 공개 거부, 필리핀 정부의 역량 부족 및 PTFBCU의 제한된 자원으로 인해 밝혀지지 않은 사실이 더 많다는 것을 미루어 보아 병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 3. 미국 정부와 필리핀 정부의 입장

본 발제문의 서두에서 역사적 배경을 언급한 이유는 정보 공개 및 사후 정화 작업과 관련하여 미국 정부가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필리핀 정부 역시 좀 더 적극적인 방식으로 협상에 임하지 않는 현실을 해명하기 위해서였다.

클린턴 행정부 때부터 부시 행정부에 이르기까지 미 국방부나 미 대사관의 관리들은 기술적 지원이나 정화 작업과 관련하여 모두 이름뿐인 약속만 내걸면서 때로는 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의도적으로 축소하거나 거짓말 또한 서슴지 않았으며 독극물에 관한 책임 여부가 거론되면 매우 외교적이면서도 거만한 답변으로 일관해왔다. 이 중 어느 미 대사관 관리가 GAO 보고서가 소문에 근거한 것뿐이라면서 기지협약에 근거한 미국 측 책임을 논하는 것은 "개소리"라는 폭언을 내뱉기도 했다. 1996년 마닐라에서 개최된 APEC 회의석상에서 미 국무부 장관은 언론에 미군기지 오염 문제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했으나 국무부 측에 직접 문의해본 결과 이는 국무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었다.

가장 최근에는 미대사관 측에서 미군 철수가 10년 지난 이 시점에서 미국의 책임 여부

를 논하는 것은 무효이며 이제는 필리핀 정부의 책임이라고 발언했다. 이는 대개의 오염 물질이 장기간에 걸쳐 그 부작용을 야기한다는 사실을 망각한 발언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은 기지협약에 정확과 관련하여 아무런 조항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해외 다른 나라의 기지 관련 조약이나 SOFA에서 볼 수 있듯이 기지협약은 환경에 관한 문제의식이 본격화되기 전에 체결되었다. 그러나 환경 및 인권법과 같은 국제법의 제정은 미국내 군기지였던 지역의 정확을 의무화하는 법을 미국 국내에서 통과하는 데에 기여하였고 또한 협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캐나다에 소재하는 미군기지 지역의 정확 작업 비용을 미국에서 지불하는 선례가 있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필리핀 역시도 미 정부로부터 책임 있는 조사와 정확 작업을 기대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히 있다고 본다.

한편, 라모스(Ramos)와 에스트라다(Estrada) 행정부 당시 PTFBCU를 필두로 한 시민 사회 진영의 압력으로 말미암아 미 정부와의 협상이 이루어진 적이 있다. 간헐적으로 이루어졌던 협상은 환경협력협약이라는 명칭으로 발표된 양국간 공동성명서로 이어졌는데 이 협약에 따르면 미국은 포괄적 범위의 환경 문제 해결에 협력하지만 여기에는 미군기지 관련 문제가 배제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성명서는 단순히 협상을 끝내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으며 마침 군기지 인근 지역에 사는 아이들이 독극물 오염으로 인해 죽어가고 있다는 보도로 인해 격앙된 필리핀 국민 정서를 잠재우기 위한 정치적 수였던 것이다.

현재 4년차인 아로요(Arroyo) 행정부에 들어서서 모든 협상이 중지 상태이다. 과거와 마찬가지로 군사 지원, 차관 및 투자 관련 문제에 밀려 군기지 지역 정화 문제는 언제나 뒷전이다. 아로요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군기지 문제는 양국간 협상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각계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의제에서 완전히 사라졌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협상 주체인 외교부는 미국 측에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군기지 정화의 수용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달리 어쩔 도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몇몇 정부 관리들은 미국이 필리핀을 도울 용의도 있으나 PTFBCU가 자꾸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귀뚱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 정부 측에서 문제를 자꾸 덮어두려는 가운데 필리핀 정부는 미국과 VFA와 MLS A29)라는 새로운 협정을 체결하면서 군기지 오염 문제의 해결에 자꾸 멀어지고 있다. 이 같은 협정은 미군에 필리핀 전 열도에서의 무제한 전쟁 훈련 기회 제공, 무기 반입 및 주유 허용은 물론 군사시설의 설립마저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군사훈련은 미군의 전투병력 및 첩보원의 지원을 받아 심지어 내전지역인 민다나오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2004년 7월 수빅 만에 쓰레기를 무단 투기한 미 해군함에 대해서 벌금을 부과했던 경우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필리핀 기지를 방문하는 미군을 대상으로 환경법에 준수하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당시 방문군협정위원회는 미군에 우호적인 판정을 내렸다.

기지 전환 과정에서 클락 기지와 수빅 기지 관계자들은 오염 문제를 축소해석하면서 기지 내 근로자, 직원, 투자자 및 방문객들의 건강 문제를 일축해버렸다. 현재 필리핀 정부는 수빅과 클락 지역을 연결하는 국제 관문을 설립하려 계획 중으로 사후 조사와 정화 작업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해당 지역을 그대로 두어야 한다는 조연에도 불구하고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실정이다. 한 생태 문제 관련 공무원은 필리핀 정부가 정화 작업과 관련한 그 어떤 자원이거나 능력도 없기 때문에 문제를 좌시하고 있다고 고백하기도 하였다. 세계은행과 일본국제협력은행의 자금 지원과 필리핀 정부의 지원으로 수빅 매립지의 오염 및 복구에 대한 몇 개의 제한적인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이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수빅과 클락 지역은 관광 지역으로 개발되거나 필리핀 민간 사업자보다는 해외투자자들을 우선시하는 특별경제구역으로 개발될 요량으로 이 지역에는 면세 및 환경 의무 이행의 면제 등이 보장된다고 한다.

앞친 데 덮친 격으로 이 같은 전환 계획은 지역 주민들을 완전히 배제시키고 있다. 수

29) VFA : 방문군지위협정. Visiting Forces Agreement

MLSA : 상호물류지원협정. Mutual Logistics Support Agreement

빅 지역의 경우 사용한 실탄을 그대로 바다속에 버린 곳을 해변 리조트나 유원지, 돌고래 쇼장 혹은 일본인 퇴직자들을 위한 쉼터로 개발하고 있다. 또한 PCB 토지 오염과 같은 각종 오염이 보고된 여러 곳의 인근에 아이들을 위한 몬테소리 학교, 학원, 호텔, 면세점 및 스포츠 센터를 위한 부지가 들어설 예정이라고 한다. 화산 먼지를 뒤집은 채 수빅만의 침전물에 독극물 및 핵폐기물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전 조선소 지역은 지금 항구 개발이 한창이다. 클락 지역의 경우 PTFBC에서 파악하기로 대형 쇼핑센터와 면세점이 오염된 곳으로 추정된 부지에 세워질 것으로 보이며 석면 노출이 심한데다가 대규모 매립지가 지척에 있는 곳에 한국이 투자한 온실이 건립된다고 한다. 이전에 공군 군인들을 위한 주택이었다가 지금은 휴양지로 변한 곳에서 방문객들은 수돗물을 마시면 안 된다고 경고 받는다.

미국과 필리핀 정부 모두 군기지 오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호소하는 소송을 무효화 시켜버렸다. 2000년에 클락과 수빅 법정에서 각기 제기된 소송은 사법권 부재를 이유로 기각시켰다. 가장 최근의 소송은 '포괄적환경대응배상및책무법(Comprehensive Environmental Response Compensation and Liability Act)'에 의거 필리핀 내에서 야기된 피해를 규정하기 위한 일차조사의 실시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해당 지역주민들과 미국 내 한 NGO에 의해 제기되었다. 이 소송은 미국 지방법원과 연방항소법원에서 사법권의 부재, 비 미국인 원고 및 이미 폐쇄된 기지에 대한 책무를 적용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들어 두 번이나 기각되었다.

#### 4. 필리핀에서의 기지 정화 캠페인에 관한 계획과 방향

1994년 설립된 PTFBCU는 필리핀에서 미군기지 정화문제를 처음으로 시도한 단체이다.

이 단체 활동가와 회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통해, 환경정화와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즉각적인 인도지원을 위한 활동은 11년 동안 계속되어 왔다.

PTFBCU는 미군기지 환경문제를 알리고 산업 오염원에 중점적인 활동을 하는 지역 NGO와 PO(People's Organization 주민조직)의 캠페인을 지원한다. 그 결과 이 문제를

회피하려는 미군과 필리핀 정부 양측을 압박하여 움직이게 하고 많은 정보를 수집하였다.

PTFBCU의 두 지역 조직인 수빅의 YAKAP(야갑)과 클락의 SAUP(사움)-TWV은 환경오염 피해자들과 직접 연계된 활동을 하고 있다. SAUP과 YAKAP는 지역과 영향을 받은 마을 차원에서 핵심 리더들을 갖고 있다.

클락과 수빅에서 이뤄진 PTFBCU의 오랜 활동으로 클락 공군기지의 전 모터폴인 CABCOM으로 피난 온 35,000명이 거주한 마을과 기지내부의 환경, 지역 주민과 환경에 미친 영향을 연구할 수 있었다. 이렇게 민중과 연결된 활동으로 PTFBCU는 CABCOM의 피난민들과 석면을 비롯한 독성물질에 노출된 8천명의 수빅 해군기지의 전 노동자들을 조직하는 전략과 계획을 세우게 되었다.

재정난에도 불구하고 보건 조사 지원, 피해자 건강상태 대한 자료정리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했고, 미군기지로 인한 심각한 환경과 보건문제에 대한 대중 여론을 조직하여 결국 필리핀 정부가 보건모니터링과 환경조사를 할 수 있도록 압박하였다. 시설에 대한 조사를 요구한 결과, 상원 보고서는 미 행정부가 자신들의 책임을 인정하고 협상하며, 필리핀 정부는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필리핀 외무부와 환경자원이 중심이 되어 미군 군사시설에 초점을 맞추어 필리핀 정부 내 TF 팀을 만들었다. 이 조직은 비효율적이고 예산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했지만, 지금까지 이 문제를 없애는 것처럼 생각했던 필리핀 정부가 이 문제를 공식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001년 PTFBCU 위원회와 YAKAP, SAUP은 필리핀의 일부 진보단체와 필리핀 전국 조직에 의해 조직된 캠페인이 미국의 책임을 묻는데 부족하다는 걸 깨닫고 국제 연대 조직으로 ABC인터내셔널을 만드는데 합의하였다. 군 기지에 대항해 오랜 기간 싸우면서 얻은 가장 중요한 교훈은 주민들 스스로 맞서 싸워야지, 미국의 이익에 반대해서 정부가 싸워줄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현재 ABC와 위원회는 클락과 수빅에 3천명의 회원을 두고 있다.

ABC 인터내셔널은 UN 인권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2004년과 2005년에 정기 회의에 관련 문서를 제출하였고 UN의 도미니카 정의와 평화 위원회가 중재할 것을 요청하였다. 단체는 피해자를 대신해서 문제를 조사하는 특별 보고자와 피해자에 대한 조속한 인도지

원 조항을 제안하였다. 이 캠페인으로 결국 모나코의 캐롤라인 공주가 수빅과 클락의 오염지역과 피해를 입은 아이들을 방문하고 미국의 부시 대통령에게 편지를 쓰게 하였다. 이것을 통해 국제적인 언론을 통해서 유럽과 세계 각국, 필리핀내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당장 어려움에 처한 피해자들을 돕고 피해자 자립을 위해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 1) 의료지원프로그램

지역과 국제적인 후원으로 미군기지와 관련된, 특히 어린이 질병을 확인하고, 의료 검진과 약 지원, 비타민과 식량 지원 등 건강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한다. 1999년 이후 시작한 클락과 수빅의 지원책은 500명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있다.

#### 2) 석면에 관한 미국 내 법적 지원

몇몇 미국 회사를 상대로, 전 군사시설에서 일했던 노동자들의 조속한 치료와 대담을 요구하는 소송이 판 지역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소송은 기지안에서 일했던 노동자 가족들의 요구이며, 피해자들의 생명 연장을 돕기 위한 것이다. 이런 행동들은 필리핀 뿐 아니라 미국인에 의해 미국 법원에서 보상을 받은 선례가 있다.

미국 회사에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하고 있지만, ABC 인터내셔널은 소송이 미 국방부나 미국 기업에 책임을 지우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여기지 않는다. 실제로 법원은 미국, 특히 국내 건에 대해 한번도 주둔국에 도움이 되는 결정을 내린 적이 없다. 이것은 미국 국방부와 일본의 NEPA<sup>30)</sup> 연합에 대항한 필리핀의 두 건을 통해서도 밝혀졌다.

전략적 측면에서 위원회와 ABC인터내셔널은 지역과 국제 정책을 대변하고 변화를 이끌며 지역 주민들의 참여에 힘을 쏟는다. 미군기지와 마르코스 독재정권에 대항한 필리핀 사람들의 투쟁에서 얻은 교훈과 해외의 성공적 사례를 통해, PTFBCU와 ABC 인터내

30) NEPA 국가환경정책법.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셔널은 기지 정화를 위한 캠페인을 하는 NGO와 PO들 사이에 국제 연대를 통한 압력과 지역 주도의 운동간 협력이 이 문제의 중요한 해결책이 되는 요소라고 생각한다.

군사 독성물질로 인한 환경피해는 책임을 부인하거나 법을 이유로 변명할 수 없다. 보건 환경과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 정치적 의지와 비용 문제 때문에 지체될 수 없는 도덕적 문제이다. 미국과 필리핀 정부는 어쩌면 사람들이 미군으로 인한 환경문제를 잊기를 바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번 한국에서 열리는 국제 심포지움 같은 만남이 사람간 연대와 협력을 통해 인권과 국제 평화, 환경 보전을 위한 희망의 횃불로 더욱 커지고 확산될 것이다.

# 독일 미군기지의 전환 과정과 정책 제언

실케 스투진스키 (군사법전문위원회, 변호사  
Military Law Task Force Member, lawyer)<sup>31)</sup>

## 1. 역사적 배경

2차 세계 대전 직후 외국군은 나치 정권에 대항하는 해방군의 성격으로 처음 독일에 주둔하기 시작했고 1955년 이후에는 연합군의 공식적인 파트너 관계로 발전하였다. 1980 년대에 이르러서 서독과 동독에 각각 34만 명과 40만3천명의 외국군이 주둔하게 되었는데 이중 24만5천 명은 미군으로 구성되었다.

외국군과 대량살상무기의 집중으로 인해 접근 금지 지역이 늘어남과 동시에 소음 피해 (저공비행), 교통사고(군용차량) 등 환경 피해가 속출했으며 젊은 사병들이 이상 행동을 보이는 등 사회적 문제 또한 발생했다. 이 같은 상황은 서독과 동독에서 각기 달리 다루어졌는데 일례로 서독의 경우 외국군에 대항한 환경 및 평화 운동이 활성화되었으며 법정 소송 절차까지 밟는 적극성을 보였다.

독일 통일 이후 1994년 9월 마침내 연합군은 독일 땅을 떠났다. 2004년 미국정부는 재차 독일 주둔군을 철수할 것임을 시사했다. 구체적인 철수 규모나 해당 부대에 대해서는

31) 번역 : 이현지

아직 알려진 바가 없으나 2005년 말에 공식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독일에는 7만3천명의 미군이 NATO 병력의 일환으로 주둔하고 있다. 1990년의 2+4 조약에 따라 독일군 역시 50만 명에서 37만 명으로 감축되었다.

## 2. 군용지의 범위

관련 수치는 출처에 따라 다르다. 본 논의에서는 연방 환경청(Federal Environmental Agency)의 자료를 참조한다.

1990년까지 독일 전체 국토 면적의 2.8%에 해당하는 약 96만 헥타르에 달하는 지역이 군용지로 사용되었다.

당시 서독의 경우 약 25만 3천 헥타르(i.e. approx. 7,000 sites)에 달하는 지역이 독일연합군 주둔지로, 약 20만 헥타르에 달하는 지역이 서부 동맹-Western Allies(미, 영, 불, 캐나다, 벨기에, 네덜란드)의 주둔지로 사용되었다.

한편, 동독의 경우 약 24만 헥타르(approx. 3,300 sites)에 달하는 지역이 National People's Army of the GDR (NVA)의 주둔지로, 약 25만 헥타르(ca. 1,030 sites)에 달하는 지역이 옛 소련군(WGT)의 주둔지로 사용되었다. 여기에 덧붙여 약 5천 군데에 달하는 지역이 동독의 국가안보부처-Ministry of State Security (MfS)와 내무부처(Ministry of the Interior, Mdl)에 의해 군용지로 이용되기도 했다<sup>32)</sup>.

1945년 이후 독일 및 외국군에 의해 점유되었던 지역은 이미 2차 세계 대전 이전부터 군사 목적 지역으로 활용되었다. 종전 후 대다수의 NVA 및 WGT 주둔지는 물론 수 백 개에 달하는 서부 동맹의 주둔 지역 역시 군이 철수함에 따라 용도 변경되었는데 전체 철군 지역은 약 50만 헥타르에 달했다.

## 3. 오늘날 독일 군기지의 상황

32) 연방환경청의 자료(Umweltbundesamt)

오늘날에도 독일에는 핵심적인 미군 기지 시설들이 자리잡고 있다. 사령부는 하이델베르크(Heidelberg), 람슈타인(Ramstein), 슈트트가르트(Stuttgart)에, 공항은 프랑크푸르트(Frankfurt), 람슈타인(Ramstein), 슈팡다알렘(Spangdahlem)에, 훈련시설은 Hohenfels, Grafenwoehr, Baumholder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20 군데가 주요 군사 시설 지역으로 사용되고 있다<sup>33)</sup>. 이라크전 당시 독일은 미군에 영공과 항만 이용을 허용한 바 있다.

#### 4. 미군 기지 이전에 대한 정부(지자체)와 NGO의 입장

미군 재배치와 관련하여 정부와 NGO의 입장이 얼마나 상반되는지 보여주기 위해 프랑크푸르트의 라인-마인(Rhine-Main)공항을 슈팡다알렘과 람슈타인으로 이전을 사례로 들고자 한다.

이전은 2005년 말까지 이루어질 계획에 따르면, 슈팡다알렘과 람슈타인 공항의 사용 면적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독일정부와 라인랜드-팔라틴(Rhineland-Palatinate) 주정부는 이에 드는 비용 약 3억6천만 유로를 제공하기로 되어 있다. 이전 과정의 당사자로는 프랑크푸르트 공항 회사(Frankfurt airport holding company, FAG), 독일정부(Federal Republic of Germany, FRG), 라인랜드-팔라틴(Rhineland-Palatinate)와 헤세(Hesse) 주정부 그리고 미국 정부이다.

위 당사자들은 (특히 환경 피해 책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조항에 합의하였다.

- 군부대가 철수할 프랑크푸르트 공항 지역은 향후 민간 사업자인 FAG가 사용하고 미 국방부와 NATO는 슈팡다알렘과 람슈타인 공항 사용 면적을 확장한다. 독일정부는 이에 필요한 부지 및 기타 부대시설의 구입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는 동시에

33) 미군기지 리스트:

<http://www.uni-kassel.de/fb5/frieden/regionen/USA/truppen4.html>

NATO-SOFA에 따라 상기한 두 공항의 사용 면적 확대를 위해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한다.

- 미군은 시설 내부의 관련 물품을 정리할 의무가 있다. (미군이 사용하던 군수 물품) 한편 환경 피해의 경우 미군의 책임 소재가 확인될 경우 독일정부가 이를 처리한다. 피해 정도의 측정을 위한 법적 근거는 독일 환경법에 기초한다. 오염된 지역의 정화 작업에 소요될 비용은 약 1천4백만 유로<sup>34)</sup>에 달할 것으로 보이며 FAG, 독일 정부와 미 정부가 각기 1/3씩 부담한다. 향후에 비용이 증가할 경우 미 정부, FAG, 독일 정부 순으로 추가 비용의 1/3을 부담한다.

라인랜드-팔라틴(Rhineland-Palatinate)의 녹색당은 위 조약이 의회의 동참과 합의를 요하는 국가간 조약이라는 점에서 비난의 목소리를 냈다. 녹색당 측은 위 합의된 사항에 대한 즉각적인 철회를 주장하고 있는데 특히 슈팡다알렘과 람슈타인의 공군기지 확장에 반대하고 있다. 이 같은 비난을 의식해서인지 의회는 의회의 참여가 충분히 보장된 이후에 조약을 승인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에 이르렀다.

슈팡다알렘과 람슈타인 인근 지역의 시민단체들과 국내 유수의 평화/ 반군사 단체들 역시 공군기지의 확장에 반대하고 있는데 특히 인근 시민단체들의 경우 반대의 대상이 기존의 공군 기지나 미군이 아니라 기지 면적 확대에 따른 초과 비용/부담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기지 확장으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될 인근 지자체 관계자와 주민들은 상기한 계획에 대해서 이미 반대의사를 표시한 바 있다. 이와 같은 반대의 이유로는 기지 확대로 인한 직간접적인 피해, 요컨대 소음, 저공비행, 사고 시 대책의 미비, 독일 환경법의 침해 및 지역 주민들의 강제 이주 등을 꼽고 있다. 이에 2002년부터는 지자체 관계자들과 주민 개개인이 독일 환경법 위반 논리에 근거하여 소송을 걸었으나 모두 패소에 그쳤고 법정은 기지 확장으로 인해 야기되는 몇 가지가 몇몇 규정에 어긋나기는 해도 확장 자체는 독일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선고했다. 당시 법정은 환경 문제보다 군사적 이해관계에 우선

34) 역주 : 1유로(EURO)=1,200원(2005년 9월 3일 현재)

적인 기준으로 삼았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몇몇 극좌파적 성향의 시민단체들은 독일 내 모든 군기지의 철폐와 해당 부지의 환원을 요구하고 있다. 라인랜드-팔라탄(Rhineland-Palatinate) 주에서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군이 장차 전투기 가동을 줄이는 대신 수송기를 늘릴 계획인 관계로 슈판다알렘의 기지 확장은 오히려 소음 및 대기 오염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했다. 람슈타인의 경우 소음 공해로 피해 입는 인근 지역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방음 장치를 제공하기로 했다.

라인랜드-팔라탄(Rhineland-Palatinate) 주 정부와 독일정부는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노동 시장의 변화에 대한 기대 때문에 람슈타인과 슈판다알렘의 공군기지 확장을 환영하는 입장이다. 기지 확장에 따른 투자물량은 자그마치 5억 유로에 달할 것으로 이르며 라인랜드-팔라탄(Rhineland-Palatinate)주에서만 3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5. 미군기지 반환과 관련된 독일 내 절차 및 관행

군용자로 사용되던 지역을 민간에 사용 허가를 내기 전에 해당 지역의 환경 피해와 그로 인해 경제적 손실 및 위험의 소지 등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해당 지역의 사용권한이 민간이 아니라 독일 군에 이전되어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기지 반환에 앞서 오염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에 대한 평가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 같은 평가는 해당 지역이 군에 의해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관한 정보가 공개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나 안보상의 문제로 군측은 중요한 정보의 공개를 꺼리는 가운데 오염 여부 및 정도에 대한 측정은 미완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 1) 오염지역의 관리에 관한 일반 법체제(General Legal Framework for the Management of Contaminated Sites)

독일정부는 연방정부로서 각 주는 헌법에 따라 개별적인 사법권한을 지닌다. 이 때문

에 오염 지역의 관리에 관한 통일된 국가적 차원의 접근법이라는 것은 부재하다. 폐기물 법, 수질에 관한 법, 건물법 및 배출권 통제 법과 같은 몇몇 연방 법안(federal acts)의 경우 오염된 지역의 관리와 연관되어 있지만 이들 법안만으로는 부족한 실정이다. 1999년 3월 1일 통과된 연방 토지보호법은 기존의 법들에 대한 보완책으로서 오염된 지역의 관리에 관한 각 주의 개별적인 접근을 어느 정도 통일시키고 장차 발생할 수 있는 토양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한편 오염지역의 관리에 관한 국가적 차원의 접근이 부재함에 따라 각 주는 관련된 법 조항의 정비에 힘써왔다. 특히 군기지 오염 문제는 폐기물 법과 관련지어 다루어지는데 간혹 수질에 관한 법과 토지보호법도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환경법을 일관되게 통일시키기 위해서 각 주는 다양한 채널을 통한 협력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보통 오염을 야기시킨 당사자/당국이 정화 작업의 부담을 지나 실제 오염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을 경우 정부 차원의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진다. 경찰 법(Police Acts)에 따르면 구 혹은 시청과 같은 최저 행정 구역 단위의 당국이 오염 지역에 대한 확인 및 관리 작업을 수행하게 되어 있다.

### 2) (오염된) 외국군 주둔기지에 대한 책임

외국군 주둔기지는 크게 2차 세계 대전 이후 서부 동맹군과 구소련연합군에 의해 사용되었던 지역과 양자 조약 및 NATO를 근거로 독일에 주둔했던 군에 의해 사용되었던 지역으로 나눌 수 있다. 1990년 이후 반환된 기지들은 모두 일괄적으로 독일연방정부의 소유권으로 환원되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의 오염 가능성에 대한 책임은 연방정부가 지게 되었다. 한편 군기지로 사용되었던 지역은 처음에 모두 잠재 오염 지역으로 분류된다.

### 3) 외국군 주둔 지역에 대한 책임

외국군이 점유하고 있는 지역은 원칙적으로 독일 사법권으로부터 면제된다. NATO-SOFA나 NATO Supplementary Agreement 등에 따르면 독일에 주둔하고 있는 외국군은 면책권을 누린다. 그러나 NATO-SOFA의 제 2조항에 따르면 외국군은 독일환

경법을 준수해야 하며 이에 따라 주둔 지역이 오염되었을 경우 정화의 의무를 지게 되며 필요에 따라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구소련연합군의 법적 지위는 1990년 10월 12일 구소련과 독일연방정부간에 체결된 군철수에 관한 협약에 의해 결정되는데 이 협약에 따르면 구소련연합군은 독일연방법에 준수하며 주둔 지역과 관련된 피해에 대한 의무를 지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구소련 측에서 이와 같은 사항을 이행한 적은 없었다. 1992년 12월 16일 소위 “제로 옵션”에 관한 협약에 따라 구소련연합군에 의해 야기된 환경 피해에 관한 배상은 면죄되었다.

#### 4) 외국군에 의해 사용된 시설

독일연방정부는 1994년 서독에서 서부 승전국들을 상대로 제기되었던 모든 일절의 배상 요구에 대해 전쟁및전후점령중야기된문제에관한해소협약(Agreement on the Clarification of Issues Resulting from War and Post-war Occupation)을 근거로 무효로 선고했다.

1955년 5월 5일부터 독일연방정부가 NATO에 가입한 시점인 1963년 7월 1일에 이르는 기간 동안 독일연방정부는 독일에 군을 파견했던 당사국에서 야기한 오염 피해에 대한 배상 청구에 대해 면죄부를 주었다. 한편 독일이 NATO에 가입함에 따라 NATO의 규약과 SOFA의 조항 등이 독일에 주둔하는 외국군을 대상으로 한 법적 체제의 근거가 되었다. NATO-SOFA가 1993년 개정됨에 따라 독일에 주둔하는 NATO군 역시 독일 환경법에 준수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독일연방정부는 독일에 주둔하는 외국군이 고의로 혹은 과실상 토양 오염을 야기했을 경우 그 책임을 당사국에 물을 수 있게 되었다.

한편, 한때 동맹군에 의해 사용되었던 지역의 오염 가능성에 대한 책임은 현재 해당 지역의 소유주-대개의 경우 독일연방정부-가 지게 되었다. 그러나 이전에 군사작전에 사용되었던 지역이 민간 소유주의 것일 경우, 피해 당사자는 “주둔군이 야기한 피해에 대한 배상법( Act on Compensation for Damage Caused by Occupying Force)”을 근거로 오염에 대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6. 전환의 과정/절차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군기지는 일단 독일연방정부 소유권으로 반환된다. 해당 지역의 새로운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민간 영역의 투자자 및 기관은 영토와 시설을 인화된 가격이나 차후 지불 방식으로 구입할 수 있다(1992년부터 1994년까지 연방재정부에서 제정된 여러 관련 법령 참고).

독일연방정부는 개발 자금이나 대출을 통해 군기지의 민간 개발을 장려하고 있는데 해당 지역에서 오염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한편 지리적 여건이나 오염 여부 때문에 군기지 영토나 시설을 팔거나 기타 다른 경제적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일례로 많은 경우 해당 지역을 주거 지역이나 상업 지구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게다가 해당 지역에 대한 조사 및 정화 작업은 실제 시장 가치보다 훨씬 더 높은 비용을 야기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오염 관리에 드는 비용은 세금에서 충당할 수밖에 없다. 1991/92년 PERIFA Programme의 일환으로 유럽의회는 군기지를 민간용 부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견되는 오염 지역에 관한 관리를 위시고 하는 몇몇 프로젝트를 지원했다. 또 1994년 KONVER Programme에 따라 유럽연합은 과거부터 군부대의 존재에 의존해온 지역의 경제적 활로를 다양화하기 위한 작업을 지원했다. 이 같은 지원은 군사작전으로 야기된 오염 지역의 정화 및 개선을 포함하고 있다. KONVER Programme에 할당된 전체 예산은 약 5억 유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 중 얼마가 정화 작업에 소요될지는 알 수 없는 실정이다. 게다가 이 같은 유럽 프로그램 자금을 도입하는 데에는 관료주의적인 의사 결정 방식 때문에 배로 힘이 든다.

군기지 전환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바로 생태적 안보를 달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 주민들과 지역 단체장 및 주정부 관계자 그리고 노동조합 관계자에 이르는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참여가 필수불가결하다<sup>35)</sup>.

지금까지 전환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단체들이 구성되었는데 이들 단체는 해당 지역 대표자들에게 유용한 조언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전환 과정을 평가하는 노릇을 수

35) Olaf Achilles, "Kommunale und ökologische Folgen der Konversion (II)",

<http://www.uni-muenster.de/PeaCon/wuf/wf-91/9141101m.htm>

행하기도 한다. 그 중 대표적인 단체로는 1994년 (자칭) “군부대 관련 구조, 자산 및 기능의 유용하고도 효과적인 전환을 통해 평화와 개발을 도모하는 독립적인 비영리 단체”로서 설립된 BIC<sup>36)</sup>가 있다.

이 단체의 주된 활동은 아래와 같다:

- 국방 예산: 군사 영역의 자금을 비군사적 목적으로 용도 전환하기 위한 방안 연구
- 연구 개발: 군사 R&D 역량을 비군사적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 연구
- 국방 산업: 군사 산업의 전환을 위한 작업. 다운사이징 및 무기 생산의 감축 위한 지원.
- 제대 및 복귀(Demobilization and Reintegration): 군인 및 군부대 시설 내 민간 직원들의 제대 및 비군사 영역으로의 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 기지 폐쇄: 전세계 과잉 군사시설의 폐지 및 성공적인 민간 재개발을 위한 프로그램.
- 잉여 무기: 대안적 사용, 수출 제한 및 영구적 폐기.

BICC는 North-Rhine-Westphalia and Brandenburg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전환 과정에 관여한다.

반환 예정인 군기지의 처리 및 활용과 관련하여 해당 지역 관계자 및 이해 당사자들에게 유용한 조언을 제공하기 위해 특별한 매뉴얼이 개발된 바 있다.

아래의 내용은 독일에서 군용 지역의 전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단계별로 다루고 있다:

#### 1) 해당 기지의 공개(Release of the site)

독일연방정부는 해당 지역이 국가적인 차원이나 공익의 목적으로 활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지의 여부를 가늠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민간 사용자에게 부지

36) Bonn International Conversion Centre <http://www.bicc.de>

의 이용 기회를 제공한다. 이 때 해당 지역은 지역단체장/광역단체장이나 주정부의 관할 아래에 놓이게 되며 지역 주민들 및 관계 기관과 함께 용도 사용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한다.

#### 2) 오염 지역의 정화

가장 중요한 점 중 하나는 오염 지역의 면적과 정화의 비용이다. 연방 토지 보호법에 따르면, 독일연방 정부는 일차적인 오염 조사를 수행하고 그 지역을 정화시키는 데에 필요한 조치들을 결정하게 된다. 지방자치체와 주 정부, 연방 정부, 건축과 환경을 책임지는 관계자들이 협력체를 구성하여 전환 과정 전반에 관해 합의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연방 정부는 지역 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으며 만약 오염으로 인한 지방 주민의 피해가 예상될 경우 비용의 100%를 부담한다.

#### 3) 부지의 양도

일차적 정화 작업 후, 해당 지역의 개발을 주도해 온 지방자치체/주는 그 지역을 지방자치의 이익으로 활용하거나 이후에 민간 사업자에 매각하기 위해 그 부지를 사들인다. 이 때 구입 가격은 아직 오염 및 정화 작업의 수위에 따라 다르다. 흔히 지자체 측은 투자할 충분한 돈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방자치체의 경제적, 환경적인 이익을 고려하고, 지방 주민들의 이익이 되면서 지역의 경제적 발전을 증진시키는 혼합된 용도를 보증하는 데에 동의하는 민간 사업자들을 찾는다. 예측 불가능한 잠재 비용을 포함해 앞으로 잇따르는 정화 작업의 필요 여부에 따라 독일연방정부는 관련 법률상 혹은 계약상 정화 작업 비용의 90%까지 부담하게 된다.

#### 4) 일시적인 용도

긴 정화 작업 동안 지자체/주정부가 부지의 일시적인 용도, 특히 빌딩의 용도를 관계자

들과 함께 계획한다.

#### 5) 민간 부문의 사용 : 4가지 가능한 모델이 있다:

- 주 정부가 소유자로 남고 지자체가 개발비용으로 특정한 금액을 청구하여 그 지역을 사용하고 이익에 관여한다. 지자체에게는 재정적 부담이 적다.
- 개인 사업자들이 해당 지역을 구입하고 개발비용의 부담을 진다. 구입 의사가 있는 사업자가 실제로 나타나고 정부 측과의 협조가 가능하다면 성공 가능성이 높은 모델이다.
- 지자체가 직접 그 지역을 구입하고 매각한다. 이 모델은 지자체의 제한적 재정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 주 정부가 해당 지역을 지자체에 팔지만 여전히 개발 비용을 부담하고 이익의 일부분을 취한다. 지자체의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그리 크지는 않지만, 주 정부의 입김이 어느 정도 작용하게 된다.

공공-민간 파트너십(PPP) 모델은 사업자의 경제적 이익과 직업, 휴양 지역과 미래의 환경보호와 관련하여 지방 주민들의 이익을 결합시키기 위해 개발되어 왔다.

적정 모델은 모든 관계자들의 이해 관계를 고려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을 담보해야 한다. PPP 모델은 상당히 성공적인 사례를 많이 남겼다. 계획하는 단계에서 지역 주민들 또한 관여할 권리가 있는 가운데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주 정부는 사업자의 목표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개발 자금을 제공한다. 주 정부는 이후의 사용 여부에 대해서도 관여하고 통제할 수 있다.

### 7. 성공적인 전환 프로젝트의 사례들

먼저, 지자체와 주 정부 관계자들, 그리고/또는 개인 사업자들에 의해서만 계획된 경우가 대부분이며 간혹 지방 주민들의 참여가 함께 가능한 전환 프로젝트가 있다는 점을 언

급하고자 한다. 이는 주 정부가 예전 군용 부지의 일차적인 소유자가 되고, 지방 풀뿌리 차원에서는 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독자적으로 군용 부지를 민간에 양도하는 작업을 주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 정부와 지자체의 관계자들의 전환 과정에의 개입은 불가피하다.

현재, 많은 프로젝트들이 장기간의 정화 과정과 이에 필요한 허가를 얻는 데에 관련된 번잡한 절차 등의 이유로 끝까지 진행되지 못한 채 남아 있다. 하지만 성공적인 전환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사업자의 경제적인 이익에서부터 지역 주민들의 공공 이익에 이르기까지 어떤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일까?

이에 대해 라인랜드-팔라틴(Rhineland-Palatine)의 프로젝트는 시사하는 바가 많다. 전반적으로, 풀뿌리 민주주의 관점에서 볼 때 전환 프로젝트는 초기부터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관여하여 가능한 한 다방면의 이익을 모두 고려할 수 있을 때에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다.

첫 번째 예로, Ober-Olmer 숲의 생태학적 모델 프로젝트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과거에 6천 헥타르에 달했던 이 숲은 18세기부터 군용 지역으로 사용되어 왔다. 나무들은 뿌리째 뽑혔고 이제는 350 헥타르의 숲만이 남았습니다. 해당 지역은 1993년부터 더 이상 군용 지역이 아니다.

오랜 기간 동안 군용 지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숲은 몇몇 천연기념물종을 포함하여 많은 동물과 식물의 안식처로 계속 기능해왔다. 오염된 토지와 물에 대한 정화 작업 이후, 28 개의 공습 대피소 중 26 곳이 폐쇄되었고 그 자리에 대신 풀을 심었다. 남은 2곳의 공습 대피소는 박쥐의 은신처로 개조되었다. 그 외 나머지의 군용 시설들은 (막사, 울타리 등) 모두 철거되었고 아스팔트 거리를 제거한 자리는 인근 지역의 흙으로 메웠다. 이러한 조치들은 생태학 전문가와 지방 관계자들 간의 긴밀하면서도 효과적인 협조 하에 계획되고 실현되었다. 오늘날, 해당 지역의 주민들에게 숲은 최대의 휴식처이자 생태 관광의 증가에 따른 고용효과도 안겨주고 있다.

두 번째 예는 쓰바이브뤼켄(Zweibruecken)에 있는 흰 막사들을 주택 단지가 있는 생태 주거 구역으로 전환한 프로젝트이다. 1977년부터 1994년까지 해당 지역은 미국 공군에 의해 사용되었는데 처음에 독일연방정부에 반납되었다가 다시 쓰바이브뤼켄(Zweibruecken)의 지자체에 매각되었다. 시는 해당 지역의 복원 프로젝트 계획과 정화

작업에 관여하기로 하고 지자체와 계약을 맺은 한 민간 사업자에게 되팔았다.

계획 초기 단계에서부터 여러 분야에 관여하는 건축가, 조경 전문가, 도시 계획자에서 환경주의자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배경의 관계자들 함께 계획 작업을 진행했는데 이 프로젝트는 가까이 생태학적 기준을 고려할 용의가 있었던 개인 사업자로 인해 지자체와의 협력이 비교적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사례이다.

프로젝트의 목적은 막사와 주변의 오래된 나무들이 있는 공터의 원형을 보존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놀이터, 만남의 장소와 넓은 정원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려고 몇몇 큰 건물들이 철거되었다. 또한 필요한 인프라로서 자전거 및 자동차 전용 주차 공간도 마련되었다. 특기할 만한 점으로 빗물을 이용한 물의 재활용 시스템 구축이라는 저가-고효율의 친환경적인 장치를 들 수 있다.

## 8. 지역 주민들, 지자체와 주 정부에 의한 전환 프로젝트의 평가

전환 프로젝트는 그 나름의 전문화된 시장을 형성한다. 군용 부지의 정화 작업은 오염 정도를 측정하고 군수품, 시설 및 막사 등의 처분을 위해 관련 전문가를 요한다. 많은 계획 관계자들이 군용 부지의 개간에 관여하고 특히 기본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 적용되는 '전환 시장(conversion market)'에 진입하게 된다.

이해 당사자들 모두가 관여하는 전환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 지역 주민들이 많이 관여하고 그들의 이익이 고려되어졌을 때
- 전환이 지방 경제와 노동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때
- 투자가의 수익에 있어서 생태학적 요인과 지역 주민들의 이익을 위한 여지를 남겨둘 때

한편 아무런 혜택을 제공하지 않고, 지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전환 프로젝트들의 예도 있다. 정부는 때때로 지역 인구에게 전혀 어떤 혜택도 돌아가지 않는 프로젝트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프로젝트 규모가 큰 경우 독일연방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필요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개발 자금을 할당하는 리스크를 감행한다. 자금을 적합한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 역시 하나의 도전인 것이다.

## 9. 환경 파괴에 대한 미국의 책임<sup>37)</sup>

독일의 형사상 환경법은 상당히 엄격한 편인데 이제부터 독일에 주둔한 미국군에 의해 야기된 환경 오염, 재산 피해와 개인 손해와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데에 독일 형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유럽 내 미국 군사 작전으로 인해 제기되는 배상 요구는 NATO-SOFA 조항에 따라 처리한다.

NATO-SOFA는 경우에 따라 수용국(이 경우 독일연방정부)에 의한 사법권의 행사를 보장하기도 하지만 1963년 독일은 중북관할권의 상황에서 미군 범죄에 대한 기소·조사 권리를 포기했다. 독일검찰은 범죄 발생 후 21일 안에 군측으로부터 관련 통보를 받아야 하며 독일 사법권의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할 경우 기소 포기 의사를 반복할 수 있다<sup>38)</sup>.

이에 대해 독일 고등법원은 21일 안에 독일 측에 의한 기소 포기를 반복하지 않더라도 파견국이 사법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독일이 자동적으로 사법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또한 피고측이 군에서 방출당하거나 그리고 파견국이 사법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개정된 NATO-SOFA (Revised NATO-SOFA Supplementary

37) 사법권 및 기타 법률 사항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Steve Barnett and Connell Foley LLP 저, "유럽내 미군기지 반환에 따른 환경 규정"을 참고하거나

<http://www.cfg-lawfirm.com/articles/barnett1.html>의 내용을 확인하기 바란다.

38) i) Offences within the competence of the Higher Regional Courts(Oberlandesgericht) in the first instance or offences which may be prosecuted by the Chief Federal Prosecutor(Generalbundesanwalt) at the Federal High Court of Justice(Bundesgerichtshof);

ii) 민간인에 대한 살인, 강도, 성폭행 등의 범죄의 경우;

iii) 상기한 범죄를 계획하거나 실제 가담한 경우.



Agreement)의 19항에 따라 수용국(즉 독일연방정부)이 제약 없이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독일에 주둔하고 있는 군에 관한 NATO 보충 협정(Supplementary Agreement)에 따라 NATO군은 '공공 안전과 질서' 관한 기준이 독일의 경우와 비등하거나 그보다 상위일 경우 해당군의 규정을 적용시킬 수 있다. 독일 법률 전문가들은 여기에 독일 환경 규정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NATO 보충 협정은 군대에 의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상호 배상을 배제하고 있다. 오로지 NATO군 측의 제 3자에 대한 피해에 관한 한 수용국과 파견국이 배상 비용을 절반씩 부담하게 된다.

## 10. 결론

■ 전환 프로젝트는 전문가, 지역 주민들, 그리고 지자체 및 연방 정부 관계자들의 참여와 협조 하에 계획되어야 하고 모든 이해 당사자들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

■ 해당 지역에 대한 생태학적, 경제적인 이익을 통합하고 군시설에 의존했던 지역 경제의 재건을 위해 새로운 고용 기회를 만들어 전환 프로젝트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수용 의사를 제고시킬 수 있다.

■ 독일연방정부의 자금을 이용한 일차 오염 측정과 정화 작업은 DOD(미 국방부)와 최대한 협력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후자는 군용 부지의 이전 용도에 대한 모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전환 프로젝트는 성공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 과학적 평가를 수반해야 한다.

■ 독일연방정부는 환경 오염 피해에 대한 군측의 책임 이행을 관찰시켜야 한다. 깨끗한 부지를 넘겨주는 군의 의무에는 (수용국의 환경법에 따라) 어떤 환경 오염이라도 정화하는 것을 포함된다(NATO 보충 협정의 48, 49 그리고 54a항).

■ 독일연방정부는 정화의 비용을 부담하는 것에서 면제되어야 한다. 대신 해당 자금은 군용 부지의 인근 지역에 고용 창출의 효과를 만드는 데에 사용되어야 한다.

# 한국의 미군기지 환경, 문제점과 해결방안

김제남(녹색연합 사무처장)

## 1. 배경

한국 국내에서 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1990년대 초반부터 미군기지가 오염원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생겨났다. 그동안 끊이지 않고 생겨난 환경오염사고로 인근 농토와 하천이 더럽혀졌지만 미군 기지를 조사할 수 없고, 미군에 적용되는 법 체계가 없어 해결책이 없는 상태였다. 2000년 이후 SOFA 환경조항 신설로 환경오염사고 처리 체계가 마련되었으나 여전히 국내 환경법을 완전히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어서, 국내법에 따른 책임자 처벌이나 조사권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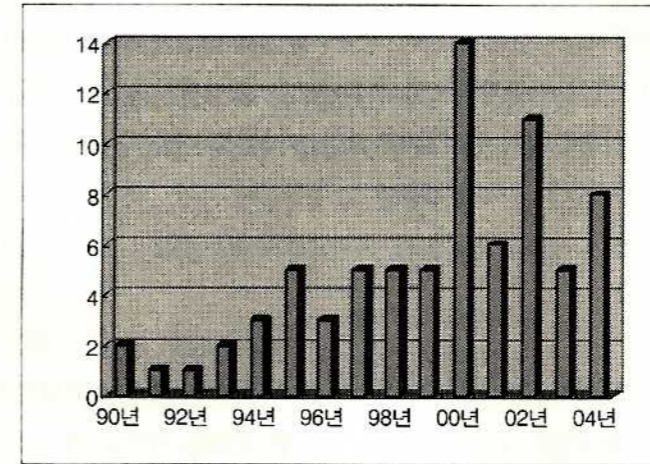
미군기지 환경문제는 미군 범죄와 더불어 미군 주둔으로 인한 문제, 불평등한 한미 관계를 부각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현재 한국의 미군기지 환경문제는 크게 미군이 사용하고 있는 시설에서 오염사고가 발생했을 때 처리절차와 반환 예정인 미군시설에 대한 오염조사/정화 과정으로 나눌 수 있다. SOFA 환경조항 역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의 전반적인 환경정책을 감시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부분은 취약점으로 남아 있다.

## 2. 미군기지 환경오염사고의 특징

### 1) 2000년 이후 환경오염사고 현황과 특징

주한미군 환경문제는 2000년 7월 13일 언론을 통해 보도된 한강독극물 방류사건(이후 설명)을 계기로 큰 전환을 맞는다. 아래 그림1에서 보듯 미군기지에 의한 환경오염사건은 1990년대(1990~1999)에는 한해 평균 3.2건 정도로 나타나다 2000년 이후에는 한해 평균 8.8건으로 2배이상 증가하였다.<sup>39)</sup>



<연도별 오염발생 건수>

이처럼 주한미군이 저지르는 환경오염 사건이 해가 거듭될수록 증가하는 이유는 주한미군이 최근 들어 더 환경오염을 시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 예전부터

39) 이 수치들은 녹색연합이 언론보도와 시민제보, 자체 조사를 통해 입수한 자료다. 따라서 모든 주한미군환경오염사건을 다루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또 이 글에서 사용하는 발생시기는 오염사건이 최초 발생한 시기가 아니라 환경오염 사건을 미군기지 주변 지역 주민이 알게 된 시기거나 언론을 통해 한국 국민에게 알려진 시기를 뜻한다.

발생해오던 주한미군 환경오염범죄가 최근 들어 하나하나 한국사회에 알려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전에도 존재했으나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사실들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주한미군 환경오염사건이 한국 사회에 알려지는 과정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현재까지 발생한 모든 주한미군 환경오염 사건은 내부고발자의 제보나 오염원이 기지의부까지 흘러나와 미군기지 주변 주민들이 신고하는 과정을 통해 한국사회에 알려지게 되었다. 따라서 최근 주한미군 환경오염 사례가 급속하게 증가한 것은 한강독극물방류사건을 계기로 주한미군이 저지르는 환경오염사건의 심각성에 대해 국민들의 의식이 높아지고, 미군기지 주변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의 조사능력과 정보수집 능력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환경오염이 예측되는 주한미군기지 내부를 한국 정부가 직접 조사하게 된다면 주한미군 환경오염사건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주한미군이 저지른 환경오염의 유형을 보면 기름오염이 전체 오염사고 중 77%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송유시설과 유류저장시설이 시간이 지날수록 노후화됨에도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은 탓으로 판단된다. 기지 외곽지역으로 빠져나오는 오염원의 대표적인 유형이 기름이고, 가장 쉽게 기지주변 주민들이 인식할 수 있다는 사실도 다른 주한미군 환경오염사건에 비해 눈에 띄게 증가한 주요 이유이다.

## 2) SOFA 환경조항 신설 배경

1990년대 이후 미군기지 환경오염사고가 계속 발생하였으나 뚜렷한 해결 방식이 마련되지 않았다. 98년 백운산 기름 유출건은 주변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비난 여론이 일어나 SOFA 환경분과위원회를 통해 문제제기가 되는 정도였다(이곳은 아직도 오염정화를 실시하고 있음). 미군기지 주변에서 오염이 발견되어도 오염원이 미군기지라는 사실을 밝히는 데 큰 어려움이 있었다. 지자체가 의지를 가지고 조사를 하고 주민들의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없이는 안건으로 상정되기도 힘들어, 유출사고 소식만 알려지고 묻혀버린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미군기지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던 2000년 한강 독극물 방류 사건이 발생하였다. 서울 용산기지 내 영안실에서 시체방부제로 사용되는 포르말린(포름알데히드)을 아

무런 정화없이 썩크대에 무단 방류한 것이다. 한국의 환경법상 유해화학물질로 분류되어 따로 폐기처분되어야 하는데도 영안실 부소장인 Albert Mcfarland는 군무원들에게 강압적으로 방류를 지시하였다. 용산 기지는 한국의 수도인 서울을 가로지르는 한강과 인접해 있어 썩크대에 버린 독극물이 결국 한강으로 흘러들었다는 소식은 서울 시민뿐 아니라 한국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미군을 비난하는 여론이 들끓으면서 주한미군 사령관이 주둔 이래 처음으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였고, 방류를 지시한 영안소 부소장 맥팔랜드는 수질환경보전법 위반으로 고발당하였다.

이 사건은 주한미군이 국내 환경을 지키려는 의식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국민들 뇌리 속에 박혔고 결국 2001년 SOFA 개정(40)에서 처음으로 환경조항이 마련되었다.

## ■ SOFA 환경조항 개요

SOFA(Status Of Forces Agreement)는 주한미군이 사용하는 시설, 구역과 군대의 지위를 규정한 협정으로, 본 협정과 부속문서인 합의의사록, 양해사항 등 3개의 문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타 양해각서 및 합동위원회 합의사항 등이 이를 보완한다. 환경조항은 2001년 1월 SOFA 합의 의사록과 특별양해각서로 신설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미 방위활동 관련,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상호인정하며 · 미측은 한국의 환경 법을 존중하고 우리는 미군의 안전을 적절히 고려한다 · 미군 환경 관리지침을 매 2년마다 또는 수시로 검토 보완한다 · 환경관련 정보 교류와 관련자 미군기지 출입절차를 마련한다 · 환경관리실적평가를 실시하고 주요 오염을 제거하며, 우리는 미군에 영향을 미치는 기지 외부의 오염에 적절히 조치한다.’

## 3) SOFA환경조항, 과연 효과가 있나

2002년에는 보다 구체적인 문제해결방식으로 ‘환경정보 공유와 접근 절차’를 합의하였

40) 1999년, 전국의 127개 단체가 모여 ‘불평등한 SOFA개정 국민행동’을 조직하여 SOFA 개정 운동을 벌였다.

다. 새롭게 추가된 '환경정보 공유와 접근 절차'는 ① 미군기지내 환경사고 발생시 우선 전화 통보, ② 전화 통보 후 48시간 내 서면 통보, ③ 환경사고 발생이나 기지 반환시 한국 공무원의 출입절차 마련, ④ 주한미군 환경관리 기준을 우리 법에 맞게 개정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환경조항이 새롭게 마련된 것에 의미를 둘 수 있으나 신설된 지 4년이 지난 현재, 오염 사고 처리 과정을 보면 문제를 발견할 수 있다.

#### ■ 환경오염정화 책임 명시되지 않았음.

SOFA 환경조항에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했을 때 미군이 책임을 지고 정화하도록 명시되지 않았다. 2001년 발생한 원주 캠프 롱에서 기름유출이 발생하고 주변까지 영향을 미쳤을 때 원주 시민들이 천막 농성 등 강한 해결의지를 보여주지 않았다면 다른 사고와 마찬가지로 호지부지 되었을 것이다. 이 사고는 한국에서 최초로 미군에게 정화 비용을 배상받기로 한 사례로 남고 있다. 현재까지 정화가 진행되는 것을 보면 오염 사고 하나가 해결되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필요한지 알 수 있다.

#### ■ 기지내부 조사권 없음.

SOFA 개정 당시, 시민단체의 주장에 포함된 것이 기지 내부 조사권 보장이었다. 그러나 환경조항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로 인해 환경오염사고 오염원에 대한 정확한 조사·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002년 용산기지 주변 지하철역에서 심한 악취가 풍겨 조사한 결과, 기름이 유출이 발견되었다. 서울시와 주한미군의 조사 결과가 달라 이를 두고 갈등을 빚었는데, 서울시는 지하수의 흐름과 용산기지내 주유소의 위치로 미루어, 미군기지 내에서 발생한 사고가 외부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미군은 기지내부 조사를 허용하지 않았다. 2003년 군산 공군기지 기름유출건도 마찬가지인데, 미군은 이미 오래전에 유출된 기름이 최근에 기지 외곽까지 흘러나와 발견된 것이라 주장하였다. 미군의 주장대로라면, 장시간 오염에 노출된 지역에 대한 조사뿐 아니라 명확한 오염원을 확인하는 것이 상식이지만, 미군은 기지 내부 조사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 ■ 책임자 처벌 규정 없음.

위에서 언급한 2000년 한강 독극물 방류 사건의 책임자인 맥팔랜드(미 군무원)는 수질 환경보전법 위반으로 고발당해 2005년 1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끊이지 않는 주한미군 환경범죄에서 처음으로 책임자가 한국 사법부에 의해 처벌을 최초 사례이다. 그러나 다른 사건에 대해 시민단체와 주민들이 제기한 형사 고발은 대부분은 한국 검찰이 수사 의지가 부족하고 주한미군의 수사에 비협조적이어서 오염 책임자를 처벌하기 쉽지 않다.

### 3. 반환 미군기지 환경조사과 정화

#### 1) 반환 미군기지 현황

미군기지 재배치에 따라 기지 통폐합이 이루어지면서 한반도의 미군기지 지형이 바뀌고 있다. 미군기지 반환을 요구하던 단체와 주민들의 바람이 실현되었다기 보다 미군의 필요에 의해 진행되는 계획으로 볼 수 있다.

○ 용산기지의 경우 반환이 아니라 평택에 대체 부지 52만 평을 제공, 이전할 계획이고,

○ 경기북부 반환 훈련장의 경우 오랫동안 쓰지 않던 부지를 반환하는 것은 이미 군사 목적을 상실하였기 때문이다.

○ 파주 스토리 사격장은 주민들의 토지 수용과정의 갈등, 상수원 오염, 민통선 내에 위치해 남북 군사 긴장을 고조시킨다는 이유 때문에 주민들이 반환 운동을 벌여왔음에도 불구하고 반환 대상지에서 제외되고 오히려 확장되고 있다.

한국 국회에서 비준한 협정에 따른 미군기지 반환 계획은 다음과 같다.

용산기지 이전협상(용산기지를 포함한 서울 지역의 미군기지 대상)와 LPP(Land Partnership Plan, 연합토지관리계획)을 통해 2011년까지 34개 이상의 미군기지가 반환될

예정이다.

<년도별 반환 미군기지 현황>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11년	미정
1	1	9	4	1	17	1	5

매항리 미 공군 폭격장의 경우, 2004년 FOTA회의 의제 중 하나인 10대 임무전환의 하나로 관리권이 한국으로 넘겨졌지만 결국은 20년 넘게 매항리 폭격장 폐쇄 운동을 벌인 주민 투쟁의 승리라고 볼 수 있다. 매항리는 2005년 8월 31일 미군이 한국으로 관리권을 넘기고 폐쇄될 예정이다.

2) 반환 미군기지 환경오염조사

2003년 체결된 '미군 반환/공여지 환경조사와 오염치유 협의를 위한 절차합의서'(환경 정보공유 및 접근절차 부속서 A)에 따르면 2002년 1월 19일 이후 반환되는 미군기지는 반환 1년 전부터 한미 공동으로 기지를 대상으로 오염조사를 하고 오염이 발견될 경우, 미군이 정화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반환 미군기지에 대한 오염조사를 진행하도록 규정된 것은 좋은 점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정보 공개가 되지 않는 등 조사 결과를 신뢰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3) 문제점과 해결방안

과연 미군은 기지를 깨끗하게 정화하고 돌려줄 의지를 갖고 있을까? 해외 사례나 지금까지 국내에서 벌어진 오염사고 처리 과정을 보더라도 이 질문에 긍정적인 대답을 하기 힘들다.

지금까지 발견된 문제점을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환경오염조사 과정과 자료의 공개 여부 - 국민의 알권리 보장

“정보공유 및 접근절차” 부속서 A(2003)에 따르면, 언론 또는 대중에 대한 정보 배포 또는 본 절차에 의하여 수행된 특정 정보 교환 및 조사 정보 배포는 환경 분과위원회 양측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따라서 양측의 승인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환경오염조사 일정, 환경오염조사 결과가 대중과 언론에 공개될 수 없다. 미군 관계자는 여러 차례, “한국에서 오염을 일으키는 게 미군뿐 인 것 같다”, “ 한국의 반미 세력 때문에 관련 정보를 공개하면 왜곡된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환경오염조사에 관한 자료 공개도 거부하고 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한국 정부가 갖고 있는 미군 관련 자료도 미군이 공개를 하지 말 것을 요구하면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불평등한 한미 관계를 드러낼 뿐 아니라 미군의 공개 불가 입장을 핑계로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한국 정부의 안이한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미군은 늘 말하듯대로 한국의 환경을 잘 보전하고 있다면 그것을 널리 알리고 이해시키는 것이, 미군을 왜곡시킨다는 한국 언론과 반미세력을 넘을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한다.

최근 매항리의 중금속 오염도가 발표되어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예상했던 대로 50년이 넘는 폭격 기간은 농성을 황폐하게 만들었고 주변 생태계도 이미 파괴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매항리 주민들은 환경오염조사 과정에 주민과 시민단체가 참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앞으로 심각한 오염이 밝혀진 매항리 환경오염 조사 결과와 과정이 어떻게 될지 여론이 주목하고 있다.

<매향리 농섬의 토양오염도>

조사시기	조사기관	결과
2000년	녹색연합	납이 최고 845mg/kg이 검출되었고, 크롬은 0.86mg/kg 까지 검출. 우리나라 공장용지의 평균 납 농도는 34.884mg/kg으로 농섬은 이보다 24배나 높은 수치
2005년	환경운동연합 · 주민대책위	납은 최고 2500mg/kg이 검출돼 토양오염 기준치(100mg/kg)를 25배나 초과했으며, 이는 전국 토양 평균 검출치(4.8mg/kg)의 521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카드뮴도 최고 2.13mg/kg이 검출돼 토양오염 기준치의 1.4배, 전국 평균 검출치의 21.3배를 초과
2005년	서울 신문	납이 전국 평균치의 988배나 되었다. 카드뮴과 구리 또한 전국 평균치보다 각각 54.6배, 17.1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춘천 캠프 폐지 경우, 핵 배양시설이 있던 곳으로 방사능 오염조사까지 벌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소식을 접하고 불안해 하는 지역 주민들에게 단 한번의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2) 시민 참여 확대

반환 미군기지별로 지자체, 환경부, 국방부가 참여검토 실무단이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지역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파주시의 경우 해당 기지와 훈련장이 많아 지자체의 역량 부족으로 참여가 부족한 상태이다.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는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폭 넓은 정보 획득과 다양한 의견수렴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주민과 시민단체의 참여가 필요하다.

(3) 한미 오염조사 범위 확대

현재 한미 공동오염조사는 미군기지 내부에 국한되어 있다. 그러나 환경오염은 기지내

부에서 발생하더라도 지하수 등의 영향으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오염 범위의 확대가 필요하다. 특히, 과거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했던 기지의 외부와 외부 지역 중 사고 발생 지역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정화가 마찬가지로 필요하다.

용산기지를 포함해 현재 반환 대상지로 예정된 기지 42개 중에서 기지 외부에서 환경오염이 발견된 경우는 용산 메인포스트, 종교휴양소, 캠프 하우스 등 총 7곳이다. 오염자 부담원칙을 실행시키기 위해 미군이 오염정화비용을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지 외곽에 대한 책임 역시 미군에게 있음을 명확히 해야 한다.

(4) 반환 이후 발견되는 오염의 미군 책임 명시

독일의 경우, 99년 라인마인협정에서 반환 후 3년 이내에 발견된 오염이 미군기지로 인한 것일 때 미군이 정화하도록 한 것은 반환 이후에도 오염이 발견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이다.

(5) 원상복구의무 규정

SOFA의 제4조 시설과 구역(시설의 반환) 1항에는 '합중국 정부는 본 협정의 종료 시나 그 이전에 대한민국 정부에 시설과 구역을 반환할 때에 이들 시설과 구역이 합중국 군대에 제공되었던 당시의 상태로 동 시설과 구역을 원상회복하여야 할 의무를 지지 아니하며, 또한 이러한 원상회복 대신으로 대한민국 정부에 보상하여야 할 의무도 지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시설물 철거에 대한 조항으로 환경조항이 아니라는 해석이 주를 이룬다. 그러나 미군이 환경오염정화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환경오염정화 의무를 SOFA 상에 명시하도록 개정해야 한다.

3. 결론

2005년에 10개의 미군기지와 훈련장이 반환될 예정이다. 반환을 요구해 온 주민들과 운동 단체들에게 남겨진 숙제는 오염을 정화하고 깨끗한 기지를 돌려받는 것이다. 반환 부지를 돌려싸고 누가 소유하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또 다른 관심거리이지만, 그 이

전에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를 깨끗하게 씻고 가는 일이 필요하다. 그럴 때에만 그 땅을 생명과 평화의 땅으로 새롭게 조성하여 미래 세대에 물려줄 수 있을 것이다.

## 주최단체 소개

### 미군기지반환운동연대

미군기지반환운동연대는 미군기지 주둔 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풀어나가고 지역주민들의 인권과 지역사회의 발전, 미군기지의 조속한 반환 등을 위해 활동하는 여러 미군기지 반환운동 단체들의 연대체이다.

의정부, 파주, 동두천, 춘천, 원주, 인천, 서울, 평택, 매항리, 대구, 군산, 부산 등 지역 미군기지반환운동단체들이 함께 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의 생생한 요구와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지역간 연대가 이루어지고 있다. 1997년부터 국내 연대활동을 펼쳐온 미군기지반환운동연대는 국내 단체간 연대뿐만 아니라 오키나와 미군기지 반환운동을 벌이는 단체들과도 꾸준한 연대를 맺어오고 있다.

오키나와, 하와이 등지의 미군 시설들은 모두 공개되고 한국의 미군 시설인 경우 미국 방부에서도 공개하고 있지만 유독 한국내에서는 구축된 자료가 없는데다 군사시설이라 공개할 수 없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 때문에 정확한 미군시설들에 대한 정보가 부재하다. 부족하나마 2004년 미군기지반환운동연대 소속 단체들이 기간 활동성과들을 토대로 주한미군기지 현황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사무처 : (705-829)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1동 741-2번지

전화 : 053-474-3381 팩스 : 053-474-3382

이메일 : [usbases@hananet.net](mailto:usbases@hananet.net)

카페 : <http://cafe.daum.net/antiusbases>

## 주최단체 소개

###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는 1992년 “주한미군의 윤금이씨 살해사건 공동대책위원회”의 활동성과를 계승하여 상시적으로 미군범죄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불평등한 주한미군 지위협정(SOFA)을 개정할 수 있는 활동을 벌이는 단체로 출발하였다. 주한미군 주둔으로 인한 피해는 형사상의 범죄뿐만 아니라 환경오염, 소음피해, 훈련피해, 미군공여지 재산권 침해 등 여러 형태로 나타나고 불평등한 한미 관계로 인해 미군범죄 피해자들의 인권이 침해되는 것을 개선하도록 홍보, 선전활동을 하고 있다.

미군범죄 신고 접수 및 처리 · 미군범죄 피해자 지원 · 미군범죄 백서 발간 · 불평등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개정안 마련 및 개정을 위한 활동 · 미군기지의 실태 조사와 각종 피해 조사 및 대책 마련 등의 활동을 벌인다.

주소 : (110-044) 서울시 종로구 필운동 184-3 2층

전화 : 02-723-7057, 7058 팩스 : 02-723-7059

이메일 : us@usacrime.or.kr

홈페이지 : <http://usacrime.or.kr>

## 주최단체 소개

### 녹색연합 미군기지 환경감시 활동

녹색연합은 4대 강령 중 비폭력 평화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활동으로 1996년도부터 미군기지 환경감시 활동을 벌이고 있다. 미군은 군사 활동으로 인한 환경오염, 그 오염에 대한 책임과 복구에 있어서 오랫동안 면죄부를 받아왔다. 녹색연합은 미군기지 환경문제에 대한 끊임없는 조사와 감시활동을 통해 미군도 한국 법에서 정하는 환경기준과 절차를 지킬 수 있도록 활동하고 있다. 오염자부담의 원칙, 사전예방의 원칙 등과 같은 환경정의가 미군기지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녹색연합 4대 강령 중 비폭력 평화의 실현

- 우리는 모든 종류의 폭력과 차별을 거부한다.
- 우리는 전쟁의 종식과 평화를 위협하는 핵무기 등 살상무기 폐기, 전쟁위협을 야기하는 군비경쟁과 군수산업 중단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 우리는 관용과 열린 마음의 형성, 서로의 귀 기울임, 평화의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 우리는 자연과 인간, 여성과 남성, 그리고 모든 생명들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 주최단체 소개

---

서로 다른 것이 많다는 것은 풍요롭다는 뜻입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것은 평화롭게 살고 싶다는 뜻입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전쟁 때문에 어린 아이뿐 아니라 곤충과 야생동물들, 그들의 삶의 터전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녹색연합은 못 생명을 죽이고, 그들의 보금자리를 잿더미로 만드는 모든 전쟁을 반대합니다. 생명 가진 것들의 평화를 방해하는 모든 대립과 갈등도 반대합니다. 녹색연합은 남과 북, 사람과 자연, 자연과 우주가 모두 풍요롭게, 평화롭게 사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주소 : (136-821)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113-34

전화 : 02-747-8500 팩스 : 02-766-4180

이메일 : [greenkorea@greenkorea.org](mailto:greenkorea@greenkorea.org)

홈페이지 : <http://www.greenkorea.org>

## '미군기지의 그늘, 그 너머 희망' 참가자 소개

참가자 이름	단체 및 직위	경력사항	주소와 연락처
Silke Studzinsky (실케 스투진스키)	MLTF (Military Law Task Force) Member, lawyer 군사법전문위원회	15년간 군사기지문제와 인권문제를 다뤄옴.	Mail: kanzlei@rajus.de www.rajus.de
(아시토미 히로시)	[해상헬기기지건설 반대-나고시정 평화와 민주화를 요구하는 협의회] 공동대표	1997년 「헬리포트 필요없는 나고 시민 모임」 결성, 사무국장 해상헬기기지건설반대 시민 투표 이끔.	
Kyle Kajihiro (카일 카지히로)	Program Director AFSC Hawai'i Area Program 미국친우봉사회 하와이 프로그램 사무국장	하와이 미군기지 반대운동 지도자	Email: keboi@aol.com kkajihiro@afsc.org  Internet: www.afschawaii.org or www.afsc.org
Terri Kekoolani (테리 켈쿨라니)	DMZ 하와이	하와이 미군기지 반대운동을 이끄는 여성운동가	napua4u@yahoo.com
MYRLA BALDONADO (밀라 발도나도)	Alliance for Bases Clean-up, International President 미군기지정화위원회 사무총장	13년간 수빅 클라크에서 지역주민들과 활동을 해옴	Tel: 632-925-4147 myrla_b@yahoo.com
Jade 제이드	필리핀 미군기지정화위원회 활동가		

## || 다큐멘터리로 본 미군기지

| 일시 | 9월 10일 (토) 오후 5시 | 장소 |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층 강의실

■ **상영작품** • 필리핀 : Toxic Sunset • 비에케스 : Paradise Lost ?

• 하와이 : 'A'ole Pono: The US military in Hawai'i

• 오키나와 : 헤노코, 뜨거운 마음을 이어

• 평택 : 미군기지확장 예정지, 평택이 위험하다

\* 영화상영 후 해외참가자들과 간담회가 있습니다.

### 필리핀 Toxic Sunset

1992년 주둔하던 미군이 철군하면서 폐기물 처리나 환경복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아직까지 그 피해가 인간의 몸을 통해 나타내고 있다. 미 공군이 주둔했던 CAMCOM 이라는 지역에 이동하여 거주했던 주민들이 식수로 이용한 100여개의 우물들이 미군의 폐기물로 인해 유류와 중금속에 오염된 사실을 주민들의 질병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 해군기지에서도 일하던 노동자들은 석면에 노출되는 등 미군과 비교할 수 없는 노동환경에 처해 있었다. 이로 인해 암을 앓고 있는 노동자들이 많이 있다. 기형과 질병을 안고 태어나는 2세들까지 환경오염으로 인한 인권침해가 대물림되고 있지만 미국은 원인을 인정하면서도 보상하지 않고 있으며 필리핀 정부도 미국과의 관계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조사나 지원에 나서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상영작 Toxic Sunset은 지금 벌어지는 환경재앙이 미군의 책임임을 증거자료와 피해자 인터뷰로 생생하게 보여준다.

### 오키나와 헤노코, 뜨거운 마음을 이어

헤노코, 2639일 동안에 걸친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해상기지 건설 반대투쟁에 이어 2004년 4월 19일부터 시작된 육상 및 해상 농성. 일본과 미국정부가 합의하였지만 9년이 되도록 새로운 기지 건설은 진척되지 못한 상태다. 주일미군의 70%가 주둔하는 오키나와, '생명은 보물'이라는 오키나와 정신과 미국이 벌이는 전쟁에 가담할 출격지가 되고 싶지 않다는 평화의 마음이 바다를 지키고 삶을 지키고 있다. 일본 정부가 어마어마한 돈과 대형 선박을 동원한 기지건설 조사작업에 맞서 카누와 주먹밥으로 대응하고 있는 오키나와 주민들. 그들은 아직까지 미군기지 건설에 쓰일 단 한 개의 못을 박는 것조차 허용하지 않고 있다.

### 비에케스 Paradise Lost ? 낙원은 사라진 것인가?

1941년 미해군은 비에케스섬에서 군사훈련을 시작했다. 지난 62년간 계속된 폭격은 환경을 오염시켰고, 중금속과 각종 화학물질이 주민들의 몸속으로 스며들기 시작했다. 1990년대부터 암으로 사망하는 비에케스 주민수가 급격히 늘어났는데, 푸에르토리코 의과대학 연구에 의하면 1985년에서 1989년까지 비에케스 섬에서 암으로 사망한 비율은 본토보다 27%나 높게 나타났다. 비에케스 사람들은 스스로를 '멸종위기 종'이라고 표현한다. 미군 폭격장 주변 비에케스의 주민 50% 이상이 암으로 사망했으나 미국은 어떠한 보상도 하지 않고 있다. 미해군은 2003년 5월1일 비에케스에서 공식 철수했다. 폭격은 멈췄지만 재앙은 계속되고 있다. Paradise Lost? 는 아름다운 섬 비에케스의 비극, 그 비극이 가져온 고통을 주민들의 목소리를 통해 전달하고 있다.

### 하와이 'A' ole Pono: The US military in Hawai'i

태평양 낙원으로 여겨지는 하와이. 그러나 사실은 미국의 태평양 지역 사령부가 주둔하는 곳으로 하와이 원주민들이 미군기지로 인해 생존, 안전, 문화적 피해를 입고 있는 곳이다. 특히 최근 21종의 멸종위기종이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진 하와이섬의 포하쿨로아(Pohakuloa)지역에 미군이 3천만평 규모의 스트라이커 여단 훈련장을 건설할 계획이 알려져 주민들이 거세게 저항하고 있다. 미군은 선주민들의 성지인 마우나 케아(Mauna Kea)에 NASA 연구소 건설계획을 세우는 등 선주민들(카나카 마을리)의 문화까지 파괴하고 있으며, 현재 하와이 제도 20%를 미군이 관리하고 있다. 상영작 'A'ole Pono(The US military in Hawai'i)는 하와이 미군기지의 전반적인 문제점과 아름다운 하와이 자연환경이 미군의 군사시설과 훈련으로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를 보여준다.